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

□ 개 요

○ 연장 기간 : 2021. 1. 18.(월) ~ 1. 31.(일), 2주간

* 2단계 격상(12. 8.~28.), 1차 연장(12.29.~1. 3.), 2차 연장(1. 4.~1.17.)

○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기 존	변 경
카 페	<u>영업시간 전체</u> 포장·배달만 허용	<u>21시~익일 05시까지</u> 포장·배달만 허용
종교활동	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<u>종교행사 비대면 실시</u>	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<u>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</u>

□ 주요 방역조치

- (모임·행사)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,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
(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·동반입장 금지)
- (중점관리시설) 유흥시설 집합금지, 그 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,
식당·카페는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
- (일반관리시설) 음식 섭취 금지,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
- (숙박시설) 숙박시설 2/3 이용제한,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
- (종교활동)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, 모임·식사 금지
- (직장근무) 1/3이상 재택근무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, 모임·회식 자제

□ 시설별 방역수칙

【중점관리시설】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)	<u>집합금지</u>
방문판매	<u>21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u> ,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, 노래·음식 제공 금지
노래연습장	<u>21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u> ,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, 음식 섭취 금지,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식당·카페	<u>21시 ~ 익일 05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</u> <u>2인 이상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</u> <u>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(강력권고)</u>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(50㎡ 이상)

【일반관리시설】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실내체육시설	<u>21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u> , 음식 섭취 금지, 4㎡당 1명 인원 제한
결혼식장, 장례식장	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음식 섭취 금지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공연장	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	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·멀티방 등	음식 섭취 금지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학원 (독서실제외)	음식 섭취 금지,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8㎡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㎡당 1명으로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, <u>21시 이후 운영중단</u>
이·미용업	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상점·마트(300㎡이상)	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·소독

※ (기타) 숙박시설 2/3 이용제한